

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감경 최대 20%, '24.6.21.부터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제정안을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 시행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CP 법제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시행령	고시
평가기준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신청 자격요건 : CP 1년 이상 운영 사업자 신청시 구비서류 고시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결과 및 등급 부여시 사유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 도입요건(8가지) 규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적보고서 등 평가지표 축소 조정 과징금 감경 가능 등급(AA, 80점) 이상인 경우, 심층면접 평가 추가
혜택부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경기준 : 평가등급 및 CP의 효과적 운영 여부 과징금 감경을 : 최대 20% 적용제외 등 세부사항 :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 AA 이상 등급, 유효기간 1회 → AA(10%), AAA(15%) + 조사개시 전 범위반 탐지·중단(5% 추가감경)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적용제외 요건 신설 : ▲CP 담당자의 위반행위 개입 ▲CP 도입 전 발생 위반 행위, ▲부당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1~4호 및 8호), ▲고위 임원(이사 이상)의 위반행위 직접 관여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범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한편,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하여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하였다.

한편,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하였다. ▲CP 담당자가 범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범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범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15일까지(고시 제정안의 경우 2024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 * 팩스 : 044-200-4342

- <붙임>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
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별표 등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형주 (044-200-4300)
		담당자	사무관	김해영 (044-200-4306)
			사무관	김혜린 (044-200-4308)



1**요약****1. 추진 배경**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24.6.21.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고시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2)
 - 평가신청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고시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과징금 감경 등 유인 부여 기준 및 감경을 규정 (시행령안 제91조의3)
 - 평가등급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며, 적용제외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함
- 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4)
 - 신청 사업자가 평가비용을 부담하며, 구체적인 비용 등은 고시로 정함
-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5)
 - 평가기관은 조정원 또는 평가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으로 지정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 2, 고시안 제3조, 제10조, 제12조부터 18조]

- (평가신청요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CP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시행령안 제91조의2 제1항, 고시안 제3조)
- (신청시 필요서류) 평가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실적보고서 등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청(시행령안 제91조의2 제2항, 고시안 제10조)
- (평가기준) CP 도입요건 충족여부, CP 운영상황 등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시행령안 제91조의2 제3항, 고시안 제12조~제15조, 제17조~제18조)
 - (평가기준) CP 도입 요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전년도 1년간의 실적자료에 대해 평가하며 구체적 평가기준을 고시 [별표 2]로 정함
 - (평가항목) 유사·중복 지표 통합 및 실효성 부족한 일부 지표 삭제를 통한 평가지표 축소, 공공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평가지표 신설
 - (가점부여 기준) 조정원의 「CP 등급평가 운영지침」(이하 ‘조정원 지침’) 중 일부 가점의 배점 조정
 - (연속평가 신청기업) 연속신청은 CP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그에 따른 다른 혜택(평가비용 감면 등)도 있으므로 최대가점 축소(3점→1점)
 - (다른 업체 CP도입 등 지원) 기업간 지원을 통한 CP 확산 효과가 크므로 최대가점 확대(2점→4점), 지원 대상 기업 확대(협력업체→협력업체, 계열회사, 기타 다른 업체) 및 규모에 따른 차등 폐지(대기업 0.6점, 중견기업 0.5점, 중소기업 0.4점 → 규모 구분 없이 0.7점)

- (CP 확산기여: 운영실적) 분쟁조정 실적이 없는 경우의 역차별 우려 해소를 위해 자율분쟁조정 기구 설치 및 운영실적 분리 배점
 - * 조정원 지침상 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실적(1점)을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0.7점)와 분쟁관련 의견 접수 및 처리실적(0.3점)으로 분리 배점

- (등급 보류·미부여) 범위반 혐의로 안전 상정 중인 경우 등 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등급 보류 및 미부여 가능
- (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 등급 부여 후의 조정 및 무효 사유 규정
 - (등급조정) 유효기간 내 범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 1회당 기존 평가등급을 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 하향
 - (등급 무효) 유효기간 내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 무효로 함

* 기존 예규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를 추가

- (평가결과 통지) 평가결과를 사업자에 통지하되, 등급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시행령안 제91조의2 제3항~제4항, 고시안 제16조)

2. 과징금 감경 등 유인 부여 기준 및 감경을 규정 [시행령안 제91조의3, 고시안 제19조부터 제23조]

-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 평가받은 기업의 효과적인 CP 운영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감경(시행령안 제91조의3 제1항, 고시안 제19조)
 - (시정조치)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내 1회 공표명령 감경
 -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1단계(AA,A등급)~2단계(AAA등급) 하향 조정, 사업장 공표 및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 ※ 기존 예규상의 시정조치 면제는 개정된 법 문언상 불가능하여 시정조치 감경만 규정
 - (과징금) 감경 상한은 100분의 20범위 내로 규정
 - ※ 과징금 감경기준 및 감경 상한은 과거 사례, 해외 입법례, 국회 지적, 업계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반영
 -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내 1회 과징금 고시상의 2차 조정 단계에서 10%(AA) 또는 15%(AAA) 이내의 과징금 감경
 -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범위반을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5% 범위에서 추가 감경
- (포상·지원 등) 포상·지원 등의 기준 및 정도, 적용제외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시행령안 제91조의3 제2항, 고시안 제21조부터 제22조)
 - (적용제외 요건) 시정명령·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요건 신설
 - ※ (연혁)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적용제외 요건이 과징금 감경 혜택 폐지('14.8월) 이후 시정명령에만 적용되다가 '19.10월 삭제되어 기존 예규상에는 적용제외 요건이 없음
 - 폐지되었던 과징금 감경 혜택 재도입에 따라 적용제외 요건을 부활 (일부 수정)*해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혜택을 보다 엄격히 적용
 - * ①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②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③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 ④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의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4, 고시안 제11조]

- (평가비용)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신청 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정(시행령안 제91조의4 제1항)
- (비용감면) CP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시행령안 제91조의4 제1항, 고시안 제11조)
- (세부사항) 평가비용, 감면대상, 감면금액 등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시행령안 제91조의4 제2항, 고시안 제11조)
 -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평가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평가비용, 감면대상, 감면금액 등을 고시 [별표 1]로 정함
 - (원칙) 신규평가 신청 시 660만원, 연속평가 신청 시 440만 원
 - (중견기업 및 기관) 직전연도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경우 신규평가 신청시 330만원, 연속평가 신청시 220만 원
 -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및 직전년도 평가결과 최우수(AAA) 기업은 면제

4.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5, 고시안 제4조]

- (평가기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시행령안 제91조의5 제1항)
 - * 공정거래조정원은 2010년부터 271개 평가신청 기업의 CP 등급평가를 수행하여 전문성 보유
- (지정기관 고시)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을 평가기관으로 지정(시행령안 제91조의5 제2항, 고시안 제4조)
- (지정기관 예산지원) 평가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령안 제91조의5 제3항)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91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p> <p>①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 요건을 갖추어 1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법 제120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실적보고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요건 충족 여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등급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91조의3(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 2제4항에 따라 평가 등급,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효과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100분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p>
<p><u><신설></u></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의 기준·정도, 적용제외 등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u><신설></u></p>	<p>제91조의4(평가비용) ① 법 제120조의 2제5항에 따른 평가비용은 평가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p>
<p><u><신설></u></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u><신설></u></p>	<p>제91조의5(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p>

현행	개정안
	<p>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부 칙 <제2024-00호, 2024.6.21.></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적용례)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0000.00.0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000호 0000.00.0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5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그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평가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CP 운영실적 등을 [별표 2]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이

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여 기업별 또는 기관별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위원”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6.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2개년도 이상 연속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CP의 도입 요건) 기업 등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제4조(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법 시행령 제91조의5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한다.

제5조(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관련 교육 및 설명회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제6조(평가위원의 위촉) ①평가기관의 장은 20인 이상 60인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6.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제7조(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가 과정에서 부정·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평가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평가 수행 중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평가위원의 임기) ①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 신청 기업 수를 고려하여 제6조에 의해 위촉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평가위원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의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기업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제10조(평가신청) 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실적보고서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비용) ①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평가비용을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평가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평가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자료에 대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평가등급)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등급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의 6등급(AAA, AA, A, B, C, D)으로 한다.

등급	평가점수	정의
AAA (최우수)	90이상 100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AA (우수)	80이상 90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A (비교적우수)	70이상 80 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B (보통)	55이상 70 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보통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통의 성과를 시현
C (미흡)	40이상 55 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일반 적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성과가 미흡
D (매우미흡)	0이상 40 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시스템 구축 및 성과가 모두 매우 미흡

제14조(평가의 실시) ①평가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점수 산출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 CP 실무자 등 평가신청 기업 등의 임직원에게 대해 평가위원이 심층면접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평가단계	세부내용
1단계 (서류평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 (현장평가)	○1단계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CP 운영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평가위원이 평가
3단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점수 산출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해서 자율

(심층면접평가)	준수관리자, CP 실무자 등 평가신청 기업 등의 임직원에 대해 평가위원이 추가로 평가
----------	---

③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된 최종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제13조의 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를 최종 등급으로 부여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한다)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등급을 제3항의 등급에서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한다. 단,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하향한다.

제15조(등급 보류·미부여) ①제14조에 따른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등 CP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등급을 부여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급부여 보류 또는 미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등급보류 등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등급보류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4명으로 하되 CP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등급부여를 보류한 후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급을 부여하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이 상정되어 등급부여가 보류된 경우,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보류 당시 결정된 당해 등급에서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등급보류 당시 결정된 당해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한다.

제16조(평가결과 통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기업 등을 평가한 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최종 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등급 보류 또는 미부여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급 보류 후 보류 사유가 해소되어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최종 평가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7조(등급 유효 기간) ①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신청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②제15조에 따른 등급보류 시 유효기간은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날(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이 상정되어 등급부여가 보류된 경우 의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8조(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준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한다.

②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무효로 한다.

1. 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기업 등이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거나 제2항에 따라 등급이 무효가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제19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A, AA : 공표지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3)(가)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2. AAA : 공표지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2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3)(가)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의 2차 조정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단,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기업 등이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감경률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1. AA : 100분의 10 이내
2. AAA : 100분의 15 이내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CP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기업 등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제20조(직권조사 면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②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표창)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평가증 수여)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B이하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등급이 무효로 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23조(평가증 재발급)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

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B이하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평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5장 보칙

제24조(비밀유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세부운영규정) 평가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2024-호, 2024. .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의 별표 등**

[별표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 (제11조 관련)**1. 평가비용**

구분	신규평가 신청 기업 등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6,600,000원	4,400,000원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평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중 평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관의 평가비용은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구분	신규평가 신청 기업 등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
감면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300,000원	2,200,000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평가비용은 면제한다.

다. 평가결과 AAA(최우수) 기업은 다음연도 평가비용을 면제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 (공정거래법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관련)

1. 적용

- 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나. 중소·중견기업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 다. 공공기관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대기업으로 본다.
- 라.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 4.에 따른 생략지표 적용을 요청한 경우 생략지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지표에 대해서는 직전년도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2. 평가항목

가. 대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포함)

평가항목 (7개)	평가지표 (20개)	세부측정지표 (48개)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예: 캠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자율준수편람 등)과 절차가 포함된 문서(지침서, 절차서 등)가 있는가?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로 관리되었는가?
		C1.2.3 최고경영자에서 일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C1.3 CP 운영에 관한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전달수준 확인)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C2.1.2 임명된 CP 관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C2.1.3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발령사실 통보 등)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회사로부터 충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충실성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되어 있는가?
		D1.1.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D1.2 활용 편의성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D1.3 지속적 개선 여부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평가 항목 (7개)	평가지표 (20개)	세부측정지표 (48개)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D2.1 정기 CP 교육	<p>D2.1.1 조직의 CP 교육 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원), 부서(예: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 C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p> <p>D2.1.2 CP 교육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예:교육 콘텐츠 개발비, 전문가 강의료, 교육 대관료, 교육 주관부서 운영 경비 등)되고 집행되었는가?</p> <p>D2.1.3 CP 교육 계획 수립 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 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p> <p>D2.1.4 조직이 수립한 CP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교육완료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기록 포함)</p>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p>D2.2.1 CP 교육 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p> <p>D2.2.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p> <p>D2.2.3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 (예: 시험, 인터뷰 등)</p>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D2.3.1 CP 교육 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가?	
	D2.4 CP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D2.4.1 CP 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지표(예: 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불만건수, 학습성과의 달성 정도 등)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성이 평가되고 있는가?	
	O1. 사전감시체계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p>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p> <p>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p>
		O1.2 사전업무협의제도	<p>O1.2.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p> <p>O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p> <p>O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p>

평가 항목 (7개)	평가 지표 (20개)	세부 측정 지표 (48개)
	O1.3 직접보고체계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행위 발견 시 최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O1.4 내부고발시스템	O1.4.1 임직원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보복 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O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가?(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1.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가? O2.1.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가?
	O2.2 인센티브 시스템	O2.2.1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와 개선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감사)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예: 선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안됨)
		E1.1.3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E1.1.4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하였는가?
E1.2.3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나. 중소·중견기업

평가항목 (7개)	평가지표 (17개)	세부측정지표 (40개)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 (예: 캠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자율준수편람 등)과 절차가 포함된 문서(지침서, 절차서 등)가 있는가?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로 관리되었는가?
		C1.2.3 최고경영자에서 일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C1.3 CP 운영에 관한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전달수준 확인)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C2.1.2 임명된 CP 관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C2.1.3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발령사실 통보 등)		
C2.2 예산과 인 력의 지원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회사로부터 충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충 실성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되어 있는가?
		D1.1.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D1.2 활용 편의 성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D1.3 지속적 개 선 여부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화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평가 항목 (7개)	평가지표 (17개)	세부 측정 지표 (40개)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D2.1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p>D2.1.1 CP 교육 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p> <p>D2.1.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p> <p>D2.1.3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 (예: 시험, 인터뷰 등)</p>
	D2.2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D2.2.1 CP 교육 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가?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p>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p> <p>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p>
O1. 사전감시체계	O1.2 사전업무협의제도	<p>O1.2.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p> <p>O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p> <p>O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p>
	O1.3 직접보고체계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행위 발견 시 최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O1.4 내부고발시스템	<p>O1.4.1 임직원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p> <p>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p>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보복 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구성)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가?(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평가 항목 (7개)	평가 지표 (17개)	세부 측정 지표 (40개)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1.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가?
		O2.1.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가?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와 개선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E1.1.2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E1.1.3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하였는가?
		E1.2.3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다.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제외)

평가항목 (7개)	평가지표 (20개)	세부측정지표 (47개)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예: 캠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자율준수편람 등)과 절차가 포함된 문서(지침서, 절차서 등)가 있는가?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로 관리되었는가?
		C1.2.3 최고경영자에서 일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C1.3 CP 운영에 관한사항의 회사내·외부 공시·공표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가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전달수준 확인)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C2.1.1 최고이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CP 관리자를 임명하였는가?
		C2.1.2 임명된 CP 관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C2.1.3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발령사실 통보 등)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충실성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되어 있는가?
		D1.1.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D1.2 활용 편의성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D1.3 지속적 개선 여부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평가 항목 (7개)	평가지표 (20개)	세부측정지표 (47개)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D2.1 정기 CP 교육	D2.1.1 조직의 CP 교육 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원), 부서(예: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 C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D2.1.2 CP 교육 계획 수립 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 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D2.1.3 조직이 수립한 CP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교육완료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기록 포함)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D2.2.1 CP 교육 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D2.2.2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D2.2.3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 (예: 시험, 인터뷰 등)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D2.3.1 CP 교육 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가?	
	D2.4 CP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D2.4.1 CP 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지표(예: 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불만건수, 학습성과의 달성 정도 등)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성이 평가되고 있는가?	
	O1. 사전감시체계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위반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O1.2 사전업무협의제도		O1.2.1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O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O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O1.3 직접보고체계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발견 시 최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평가 항목 (7개)	평가 지표 (20개)	세부 측정 지표 (47개)
	O1.4 내부고발시스템	O1.4.1 임직원이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보복 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O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가?(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1.1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가?
		O2.1.2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가?
	O2.2 인센티브 시스템	O2.2.1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와 개선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감사)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예: 선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안됨)
		E1.1.3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E1.1.4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하였는가?
		E1.2.3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 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3. 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항목별 국지 가중치와 지표별 국지 가중치의 곱으로 계산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7개 평가항목	항목별 국지가중치	20개 평가지표	대기업용 지표 국지가중치	중소·중견 기업용 지표 국지가중치	공공기관용 지표 국지가중치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0.135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0.674	0.674	0.674
		C1.2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0.191	0.191	0.191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0.135	0.135	0.135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0.326	C2.1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0.423	0.423	0.423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0.577	0.577	0.577
D1. 자율준수편람	0.061	D1.1 내용의 충실성	0.440	0.440	0.440
		D1.2 활용 편의성	0.372	0.372	0.372
		D1.3 지속적 개선 여부	0.188	0.188	0.188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0.124	D2.1 정기 CP 교육	0.171	-	0.171
		D2.2 범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0.384	0.563	0.384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0.274	0.437	0.274
		D2.4 CP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0.171	-	0.171
O1. 사전감시체계	0.125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0.229	0.229	0.229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0.367	0.367	0.367
		O1.3 직접보고체계	0.208	0.208	0.208
		O1.4 내부고발시스템	0.196	0.196	0.196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0.145	O2.1 인사제재 시스템	0.584	1.000	0.584
		O2.2 인센티브 시스템	0.416	-	0.416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0.084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0.504	0.504	0.504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0.496	0.496	0.496

4. 연속평가 신청 기업등의 생략지표

가. 생략지표

구분	생략지표의 수	평가항목	생략지표
대기업, 공공기관	20개 평가지표 중 6개 평가지표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충실성
			D.1.2 활용 편의성
			D.1.3 지속적 개선 여부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2 인센티브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17개 평가지표 중 5개 평가지표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충실성
			D.1.2 활용 편의성
			D.1.3 지속적 개선 여부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나. 생략지표 대상인 지표의 경우라도 기업이 적용을 요청한 지표에 대해서만 생략지표를 적용하며, 이 경우 생략지표에 대해서는 직전년도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5. 평가지표 외 가점부여 기준

구 분	최 대 가 점	내 용	기 준	배 점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	1점	제2조제6호에 따른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인 경우	2년 연속	0.3점
			3년 연속	0.5점
			4년 이상 연속	1점
다른 업체 CP도입 및 운영 지원	4점	평가 신청 기업 등의 협력업체, 계열회사, 기타 다른 업체가 평가 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에 평가신청 기업 등의 CP도입 및 운영 지원을 받아 신청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확인된 협력업체 등의 수에 따라 가점 부여	대상 업체 수 1개당	0.7점
CP 확산기여	3점	[참 여] CP행사(예: CP포럼, CP등급평가 설명회, CP 간담회 등)에 참여하고 CP관련 설문조사에 응답문을 제출	참 여	0.2점
		[사례발표] CP행사에서 기업의 CP운영 우수사례 등을 직접 발표	사례발표	0.4점
		[자료협조] CP행사에서 CP운영 사례 등 기업자료 제공, 각종 CP관련 교육 자료 제작·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외부 공개(최종 등급 A등급 이상인 기업만 해당) 등을 위한 자료협조	자료협조	0.4점
		[운영실적] 기업 등의 내부에 또는 독립적인 자율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 실적을 제출	분쟁조정기구 설치	0.7점
			분쟁관련 의견 접수 및 처리실적	0.3점

6. 평가점수 산정방법

가.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평가점수 = 각 지표별 평가점수 X 각 지표별 가중치 + 가점

나.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세부측정지표별로 7단계 척도*(AAA, AA, A, B, C, D, F)별로 정해진 구간에 따라 책정한 점수를 평가 지표별로 단순 평균하여 지표별 평가 점수를 계산한다.

$$\bar{X}(\text{지표 점수}) = \frac{1}{n} \sum_{i=1}^n X_i$$

X : 세부측정지표 점수(평가그룹 내 산술 평균값)
 n : 지표별 배정된 세부측정지표의 총 개수

* 7단계 척도 점수

구분	7단계 척도의 점수구간						
척도	AAA	AA	A	B	C	D	F
점수	90이상 100이하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55이상 70미만	40이상 55미만	1이상 40미만	0

다. 각 지표별 평가 점수에 3.의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 후, 5.의 평가지표 외 가점을 합산한다.

일반평가점수 = $\sum_{j=1}^{20} w_j \bar{X}_j$ + 가점(CP의 지속적 운영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

일반평가점수 = $\sum_{j=1}^{17} q_j \bar{X}_j$ + 가점(CP의 지속적 운영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w=대기업 및 공공기관 가중치, q=중소·중견기업 가중치)

평가증 (제22조 관련)

평가번호 : 제 20〇〇-1(2)001 호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증

기업명(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평가연도 :

평가등급 :

유효기간 :

위 기업(기관)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기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

[별표 4]

평가증 재발급 신청 시의 구비서류 (제23조 관련)

구 분	구 비 서 류
분실·소실	·분실·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등급하향·소재지·대표자· 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하향 조정 통보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평가증 원본

[별지 제1호 서식]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기업·기관명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	

CP 운영 개요	기업규모구분 ¹⁾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공기업 외 공공기관[]						
	CP 도입일자	년 월 일 / 공시일 (), 의지천명일 (), 기타 ()						
	CP 등급평가 신청이력	<input type="checkbox"/> 2000년	<input type="checkbox"/> 2000년	<input type="checkbox"/> 2000년				
	2000년 신청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C2.1	<input type="checkbox"/> D1.1	<input type="checkbox"/> D1.2	<input type="checkbox"/> D1.3	<input type="checkbox"/> O2.1	<input type="checkbox"/> O2.2
	희망생략지표 ²⁾	중소·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C2.1	<input type="checkbox"/> D1.1	<input type="checkbox"/> D1.2	<input type="checkbox"/> D1.3	<input type="checkbox"/> O2.1	
	CP도입·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업체 ³⁾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지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원한 업체 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여부 ⁵⁾							
	예산(금년도)	백만 원	담당부서		담당인원		명	
	CP 공시방법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기타()				공시횟수	연	회
자율준수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부서					직위		
	전화					팩스		
	휴대전화					전자우편		
CP 담당자	성명					업무담당일자		
	부서					직위		
	전화					팩스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업개요 ⁶⁾	연간매출액	억 원	종업원수	명	협력업체수	개사
	자산총액	억 원	자 본 금	억 원	상장여부	
	기업집단명					
	KSIC 분류상			KSIC 분류상		
	업종 대분류			업종 중분류		

상기 기업(기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2000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하며, 상기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일체의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자율준수관리자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윤리서약서 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 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금액
------	---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한다.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또는 중소·중견기업 해당 내용이 포함된 외부 공시용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하며, 그 외의 기관을 ‘공기업 외 공공기관’으로 한다.
- 2) 직전년도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작성하며, 생략을 희망하는 지표를 실적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3)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등으로부터 CP도입 및 운영을 지원 받은 경우 해당 기업·기관명을 기재한다.
- 4) 협력업체, 계열회사, 기타 다른 업체에 CP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여 그 기업 등이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에서 B등급 이상 취득한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기업·기관명 및 평가 등급을 기재한다. (예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A))
- 5)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고발,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조치일 기준)를 기재한다.
- 6) 직전회계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윤리서약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당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 실천에 적극 협조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평가신청 제한, 평가등급 부여 보류 및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 실천을 위반하여 공정한 평가 업무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담당 임직원 및 평가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도 하지 않겠습니다.
2.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